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운영 의무
신설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4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3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중독·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9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설치 기준(위치, 사양, 운영 방법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수술실 내부,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이러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의무적 설치·운영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의 경우 고도의 전문영역이자 그 과정의 폐쇄성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외부의 위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경우 이들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필요성보다 더 크게 요청된 바에 기인한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 목적 범위 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²⁾ 따라 폐쇄회로 텔레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2)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전 설치·운영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법률 근거를 마련한 것임.

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근로자의 작업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실시간 근로자를 감독·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며, 판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 설치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를³⁾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⁴⁾

또한 비록 사업장의 화재 예방 등의 안전 목적으로 사업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와 수집된 개인정보로 근태를 감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4) 대법 2018도1917 판결(2023. 6. 29. 선고)

시받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음.⁵⁾

다만, 작업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연동된 AI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스마트안전기기의 개발도 기대되는바, 이러한 기기들의 사용과 근로자의 인권을 조화롭게 규율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설치·운영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사업장별 작업 내용·특성, 위험 요인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개정안 취지처럼 현장 안전조치와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 행위나 출퇴근 장면 수집 등 목적 외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노사갈등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2013년 4월 현대자동차가 울산 1공장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가 근로자 감시용이라며 반대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고, 결국 CCTV를 철거하고 재발방지 합의서에 서명한 사건이 있었음.

대법원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수집 여대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CCTV를 골라서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2025년 10월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업장 CCTV설치는 안전관리대책이라기 보다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며 안전관리 인력 확충 및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